

「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의 통합으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‘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’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(안 제4조)
- 구미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(안 제5조~제7조)
-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위원회 회의, 간사와 서기, 분과위원회 등(안 제9조~제11조)
- 의견의 청취 및 수당 등, 운영세칙(안 제12조~제14조)
- 「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 폐지 및 경과조치(안 부칙 제2조~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및 동법 시행령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미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제 정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자치분권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지역균형발전”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,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조례의 취지나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지방자치분권’과 ‘지역균형발전’ 용어를 구미시에 맞게 수정하여 정의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. 안 제3조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.

<관련법령>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514호, 2023. 7. 4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**“지방자치분권”**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.
2. **“지역균형발전”**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정 안

제4조(정책개발 및 추진)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구미시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
2. 포럼, 세미나, 토론,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
3.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4. 그 밖에 시장이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- **안 제4조는 정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,** 구미시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 특히, 상위법령에서는 관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시의 정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상북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. 또한,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상위법에 없으므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<관련법령>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514호, 2023. 7. 4., 타법개정]

제7조(시·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해당 시·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·도 지방시대 계획(이하 “시·도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

② 시·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·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시·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
3.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·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시·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·도 지방시대 시행계획(이하 “시·도 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시·도 계획, 전년도 시·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·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 계획과 시·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정 안

제5조(지방시대위원회 설치) 시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구미시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·조정·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.

1.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·지원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3. 각 부처 및 시·도, 중앙-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의 자격,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구미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사람
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3. 구미시의회의 의원
4. 구미시 소속 공무원
5.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
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 정 안

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.

제10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, 서기는 해당업무의 팀장으로 한다.

제11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시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의견의 청취 등) 위원장은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,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운영세칙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- 안 제5조에서 제14조는 구미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상위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해 구미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<관련법령>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514호, 2023. 7. 4., 타법개정]

제67조(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, 시·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24. 1. 16.] [대통령령 제34140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

제67조(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
 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3. 해당 시·군·구 지방의회 의원
 4. 해당 시·군·구 공무원
 5.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-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⑤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 정 안 (부 칙)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진 자치분권협회의의 활동 또는 해당 협의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의 활동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-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, 「지방분권법 및 국가균형발전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법을 근거로 제정된 「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, 해당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던 “자치분권협의회”에 대한 경과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종합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정 취지는 지방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- 이를 위해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지방시대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이에, 우리시도 당면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도(道) 지방시대위원회에 목소리를 내어 우리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